

○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는?

-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를 낼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납부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혜택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사항을 개별 근로자에게 알리는 제도임.
- ※ 근거: 국민연금법 제17조, 시행령 제24조, 시행규칙 제40조의2

○ 기여금/보험료 개별납부란?

- 임금 지급 시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대하여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개별납부하고 다음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.
 - 기여금 납부: 체납 기간 중 개별 납부한 기간의 1/2.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함.
 - 보험료(기여금과 부담금) 납부: 체납 기간 중 개별 납부한 기간

○ 기여금/보험료 개별납부가 가능한 기간은?

- 기존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시행된 '99.4월 이후 보험료에 대하여 개별납부 가능. 단, 10년 경과 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.
- ※ 사업장의 체납액이 나중에 납부된 경우 이중으로 낸 개별 납부액은 반환됨. (이자포함)

○ 기여금/보험료 개별납부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하는 서류는?

- 연금 기여금/보험료 개별납부 신청서 (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또는 공단 지사에서 수령 가능)

○ 체납사실통지월(통지된 첫 달)은 개별납부 불가. 다만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할 경우 1/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.

- 기여금 원천공제 증빙서류
 - 1)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
 - 2)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)
 - 3) 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 (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)
 - 4) 급여명세서 (회사 직인, 명판 등 날인이 있어 회사발행 건으로 확인가능한 건)
 - 5) 해당사업장의 급여대장 (회계사무실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)

※ 통지월 후 개별납부대상월의 개별납부 신청은 증빙 불필요